



R & B

Policy & Business Report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안전특별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P & B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회 입법정보전문지 P&B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lc@draju.com으로 문의바랍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과 :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I.

국토교통위원회 특집	06	1. 구성
	08	2. 관련법령

II.

발의	14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26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8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29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6)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34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6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7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1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9	1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0	13) 사이버재해보험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2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3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III.

소위원회

46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55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61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3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IV.

상임위원회

66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78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0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6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8	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91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92	7) 건설안전특별법안

V.

본회의	96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99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2	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05	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112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I. 국도교통위원회

1. 구성
2. 관련법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정수 30

현원 30

더불어민주당 17

국민의힘 11

비교섭단체 2



위원장
맹 성 규

선 거 구 인천 남동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간사
복기왕

충남 아산시갑
재선(제17대, 제22대)



위원
문진석

충남 천안시갑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민홍철

경남 김해시갑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박용갑

대전 중구
초선(제22대)



위원
손명수

경기 용인시을
초선(제22대)



위원
송기현

강원 원주시을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신영대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안태준

경기 광주시을
초선(제22대)



위원
염태영

경기 수원시무
초선(제22대)



위원
윤종군

경기 안성시
초선(제22대)



위원
이건태

경기 부천시병
초선(제22대)



위원
이연희

충북 청주시흥덕구
초선(제22대)



위원
전용기

경기 화성시정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정준호

광주 북구갑
초선(제22대)



위원
천준호

서울 강북구갑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한준호

경기 고양시을
재선(제21대, 제22대)


국민의힘

 <p>간사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재선(제18대, 제22대)</p>	 <p>위원 김도읍 부산 강서구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p>	 <p>위원 김은혜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재선(제21대, 제22대)</p>
 <p>위원 김정재 경북 포항시북구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p>	 <p>위원 김종양 경남 창원시의창구 초선(제22대)</p>	 <p>위원 김희정 부산 연제구 3선(제17대, 제19대, 제22대)</p>
 <p>위원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재선(제21대, 제22대)</p>	 <p>위원 임태영 충북 제천시단양군 재선(제21대, 제22대)</p>	 <p>위원 윤재욱 대구 달서구을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p>
 <p>위원 이종욱 경남 창원시진해구 초선(제22대)</p>	 <p>위원 정점식 경남 통영시고성군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p>	

조국혁신당
진보당

 <p>위원 황운하 비례대표 재선(제21대, 제22대)</p>	 <p>위원 윤종오 울산 북구 재선(제20대, 제22대)</p>
--	---

소관기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시장형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위탁집행형준정부 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립공원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택관리공단(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테크(주)
상임위원회	한공안전기술원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국회본회의
	국회법제처
	국회법제사법처
	국회법제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법률

부문	번호	소관법률
국토도시 관련법률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토지이용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1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13	도시개발법
	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5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8	조경진흥법
	1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20	건축법
	21	건축물관리법
	22	건축기본법
	2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6	경관법
	27	건축사법
	2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3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3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택토지 관련법률	1	주거기본법
	2	주택법
	3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문	번호	소관법률
주택토지 관련법률	4	주택도시기금법
	5	공동주택관리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1	주거급여법
	12	공공주택 특별법
	13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14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1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1	공인중개사법
	22	부동산투자회사법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6	한국부동산원법
	2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2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0	택지개발촉진법
	3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3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건설정책 관련법률	1	건설산업기본법
	2	골재채취법
	3	해외건설 촉진법
	4	건설기계관리법
	5	기계설비법
	6	건설기술진흥법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문	번호	소관법률
건설정책 관련법률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10	국토안전관리원법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항공정책 관련법률	1	항공사업법
	2	항공보안법
	3	한국공항공사법
	4	인천국제공항공사법
	5	국립항공박물관법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7	항공안전법
	8	항공안전기술원법
	9	공항시설법
	1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1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12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교통물류 관련법률	1	교통안전법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8	주차장법
	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4	물류정책기본법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7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18	자동차관리법
	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도로관련법률	1	도로법
	2	유료도로법

부문	번호	소관법률
도로관련법률	3	한국도로공사법
	4	사도법
철도관련법률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가철도공단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철도사업법
	6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8	도시철도법
	9	철도안전법
	10	건널목개량촉진법
	11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위한 특별법
기획관련법률	1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2	국회과학기술처법안
		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14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1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O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3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3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고령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8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3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39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O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2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O	2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O	2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1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교육위원회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1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납북귀환여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외교통일위원회		1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제처		1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2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4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5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6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68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32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어업회의소법안	
	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9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1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9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26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8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9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3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3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1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0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26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순환경재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 · 보급 촉진법안
		33	열에너지 기본법안
		3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3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기후에너지		5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5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건설안전특별법안
		7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23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43	폐철도 및 유류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4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45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1	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위원회	1	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519호



오 기 형

선 거 구 서울 도봉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 · 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을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회사의 자기주식은 회계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현행법 일부 조항의 경우 자기주식이 자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에 관한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함.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1.25. 제안

📋 주요내용

1. 자기주식의 성격

가. 자기주식은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41조의3제1항).

나. 자기주식의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함.

1)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제2항). 2)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제3항).

다. 회사 합병 · 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2.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41조의4제1항).

나.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1조의4제2항).

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관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41조의4제3항).

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내용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안 제635조 제3항제9호 · 제10호).

3. 자기주식의 예외적 보유 · 처분 방법

가. 자기주식 소각의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함(안 제342조 제1항).

나.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음(안 제342조제2항 · 제3항).

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함(안 제342조제4항).

4. 기존 자기주식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경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되, 소각의무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부칙 제2조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899호



윤 한 홍

선 거 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미국 ·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 · 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서라도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시급히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하여 국가적으로 그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기업들에 한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고, 중요 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함(안 제351조의2부터 제351조의6까지 및 제369조제1항).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04. 제안
----	----------------

3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042호



박 범 계

선 거 구	대전 서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09. 제안

💡 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반복적으로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반복적 ·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항목 확대 등(안 제34조)

기존 통지 대상이던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뿐만 아니라 위조 · 변조 · 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부여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개인정보의 삭제 · 차단 · 회수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나. 단체소송 대상 확대(안 제51조)

현재 단체소송 대상인 금지 · 중지 청구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단체소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집단적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함.

다. 반복적 ·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안 제64조의2제2항 신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014호



김 승 원

선 거 구 경기 수원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상담과 계약체결이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담 또는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공지능인지를 파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09. 제안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542호



김 남 근

선 거 구 서울 성북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1.25. 제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서민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은 은행 대출금 월중 평균기액의 0.06%에 불과하여, 은행권의 예대마진 등 막대한 이익규모에 비해 서민금융에 대한 기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은행권에 사회공헌 성격의 출연을 요구하는 관행은, 은행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러한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은행의 ESG 경영 확대,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현, 그리고 분배적 정의에 기반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큼.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구조로 인해 은행의 추가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연요율 인상에 따른 은행권 부담은 제한적임.

이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며, 불법사금융 이용 감소 및 자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7조).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046호



김 남 근

선 거 구 서울 성북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09. 제안

제안이유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음식배달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 공정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음.

과거 이용사업자 단체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음식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합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이용사업자들의 부담완화 효과는 없었으며, 그 사이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반 도·소매 업종까지 배달사업을 확장하고 광고비를 인상하는 등 독과점 남용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왔음.

이러한 입법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시장확대를 위해 무료 배달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여 수수료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이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시장구조, 독과점 정도, 이용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비용 전가에 대한 규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특히 시장지배력이 큰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실제로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폭리 문제에 대응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카드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성공적인 입법 경험이 있음.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관련 법령만으로는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무료배달비용 전가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대수수료제도를 도입하고, 배달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대한 이용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음식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 음식배달플랫폼 소비자, 음식배달종사자 등을 정의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 등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배달종사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금지함(안 제5조).

다.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사업자가 배달 방식, 배달비 분담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사업자 대상 배달비 분담 강제, 배달비 분담 수준에 따른 차별 및 불이익제공을 금지함(안 제6조).

라.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음식배달플랫폼을 통하여 사업자 현황, 우대 수수료율 및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

마.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입점업체 현황, 소비자의 배달비 분담 내역 등 최종 결제금액의 구성 내역, 예상 배달 소요시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2조).

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의 신고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증거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이나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679호



김 태 년

선 거 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5선(제17대, 제19대, 제
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근로자 또는 시민 중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 참가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1.28. 제안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339호



어 기 구

선 거 구 충남 당진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1.18. 제안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901호



윤 한 홍

선 거 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04. 제안

💡 제안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규정한 「상법」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하여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 「상법」 개정을 통하여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한해서라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과세특례 대상에 「상법」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47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10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437호



김 미 애

선 거 구 부산 해운대구을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진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진
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부터 600억원까지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기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완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기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6조).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1.20. 제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767호



김 태 년

선 거 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5선(제17대, 제19대, 제
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현행법은 이러한 자산운용 기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지난 2007년 4월에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는 조항이 남아 있어 법체계와 조문 구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함)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투자를 할 수 있음.

한편 투자기구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법률과 독립기관 형태로 투자기관을 설립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운용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현행 조문을 정리하고 공사가 일부 위탁자산을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등).

기획재정위원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555호



김 병 기

선 거 구 서울 동작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1.26. 제안

▶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 · 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 · 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사이버재해보험법안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050호



박정훈

선 거 구 서울 송파구갑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과 국민에게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인 보험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최근 기업과 국민은 급증하는 랜섬웨어 등 지능화 ·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기업과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이버재해보험을 제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 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09. 제안

▶ 주요내용

- 가.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자산 피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사이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디지털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사이버재해보험을 침해사고로 인한 제3자 손해배상책임, 데이터 복구비용, 사업 중단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정보시스템,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 및 제5조).
- 다. 사이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사이버재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 마. 보험료율 산정 시 보험목적물의 위험도, 피보험자의 보안 수준, 사이버위험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 바. 침해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조사 · 확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정부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예방과 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업종별 · 규모별 사이버재해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사이버위험지표를 작성 · 관리하고, 보험사업자는 이를 보험료율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749호



신장식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조국혁신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지역축협 등의 자산·사업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등의 감사를 받되, 자산 등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4년에 한번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에서 매년 30건 이상의 횡령·배임·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5년간 그 규모는 65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내부통제만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농업인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조합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 총액 기준을 3백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제173조의2 신설).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01. 제안

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193호



김 소 희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하지만,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무에 있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의 제외가 필요함. 특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음.

이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12. 제안





II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3	국회경위처법안
		4	국회경호처법안
		5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12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13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1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1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16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17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1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0	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1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0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2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교육위원회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영유아특별회계법안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4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2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28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8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9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2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2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5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10·290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2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17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18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19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0	생명안전기본법안
		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재해영향평가법안
		2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46	치안산업진흥법안
		4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2028 올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어촌 빙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9	농어촌 빙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10	농어촌 빙집정비 특별법안
		11	농어촌 빙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1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8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3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임업 ·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42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4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4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12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1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1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33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34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3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4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4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43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44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4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4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4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2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28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29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0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임금체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자연환경정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7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8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2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성평등가족위원회	1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574호



윤영석

선 거 구 경남 양산시갑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9.03.	제안
상임위원회	2024.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소위원회	2024.12.03. 2025.07.22. 2025.11.25.	상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5배 가까이 급증한 2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디지털 경제의 속성상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위메프 사태 등이 발생하였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들의 판매대금을 다른 기업 매입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위메프 사태는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방증함.

그러나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중개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표준계약서, 상생협약과 같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보복조치 등의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5일 내에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의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중소 기업, 소상공인 등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려 함(안 제2조의2 및 제8조의2).

참고자료

[주요 업체 정산주기 현황]

온라인 플랫폼	정산주기
쿠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산 : 익일부터 15일이내정산 - 주정산은 70% 정산 - 정산소비자반품, 환불, 하자에의한청약철회등으로 30%는 익익월 1일 정산 ▶ 월정산 : 매월 1일~말일기간 산정, 익월 15일 정산 ▶ 빠른정산 : 구매확정일 +다음날 오전 10시 90% 쿠팡 셀러 체크카드 형태로 정산
카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확정일 + 3영업일

온라인 플랫폼	정산주기
네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정산 : 구매확정일+1영업일 정산(결제 발생일로부터 평균 약 9일) ▶ 빠른정산 : 집화완료일+1영업일 정산(결제 발생일로부터 평균 약 3일) * 빠른정산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공됨(별도 추가 이용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11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금액은 구매확정일+ 2영업일정산 ▶ 구매회원이 직접 구매확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배송완료일로부터 7일경과후 8일차에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 단, 배송완료를확인할수없는경우(배송추적상품) 상품을 발송처리한 날로부터 29일차에 자동으로 구매확정
무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말 판매마감 후 익월10일(공휴일인경우다음영업일) 판매대금 정산 * 소비자의 '구매확정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판매마감후 판매대금 정산
G마켓· 옥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정산: 1) 구매결정/반품완료/교환완료+ 1영업일 정산 2) 자동구매결정: 배송완료일+8일 3) 배송추적불가시 발송처리일부터 국내배송은 +28일, 해외배송은 +45일 ▶ 빠른정산: 스마일배송 출고 +1영업일 - 90%가 정산되며, 10%는 소비자 피해 시 환불보증금 보유하며 10일 후 즉시 정산
인터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확정(고객이 수동,자동) -> S-Money 적립(익영업일) -> 출금(매주 월요일, 전주 토~금일)->판매자 입금 ▶ 구매확정 기준으로 일정산(S-Money적립*)하여 주단위 출금 * S-Money 적립(정산) : 구매확정 후 익 영업일 적립(정산) ▶ 출금 방식 : 주 1회 (매주 '토요일~금요일' S-Money 출금 신청 건에 대하여 차주 월요일에 일괄 지급)
롯데쇼핑 (롯데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프로세스 1.고객에게상품이배송완료되는시점이후고객은구매확정을할수있고,구매확정을 하지않으면자동으로+8일차(자연일)에구매확정 * 8일까지 소요되는 이유 : 전자상거래법상 고객의 단순 변심 청약철회 의무기간(7일)을 준수한 기간 2.구매확정일+1영업일판매자정산예치금으로적립 3.정산예치금으로적립된금액은판매자(셀러)가언제든지출금신청가능하고1영업 일후정산 ▶ 셀러는 구매확정일+1영업일 즉, 9일차에 판매자 예치금으로 입금하면 판매자는 10일차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신청 가능 법정기일 준수 및 정산(수수료 등 계산) 작업을 한후 최대 3일 소요되는 정산프로세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371호



오 기 형

선 거 구 서울 도봉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라고 정함(안 제2조제4호).

나.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를 마련함(안 제4조).

다.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5조)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2)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15조,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교류의 차단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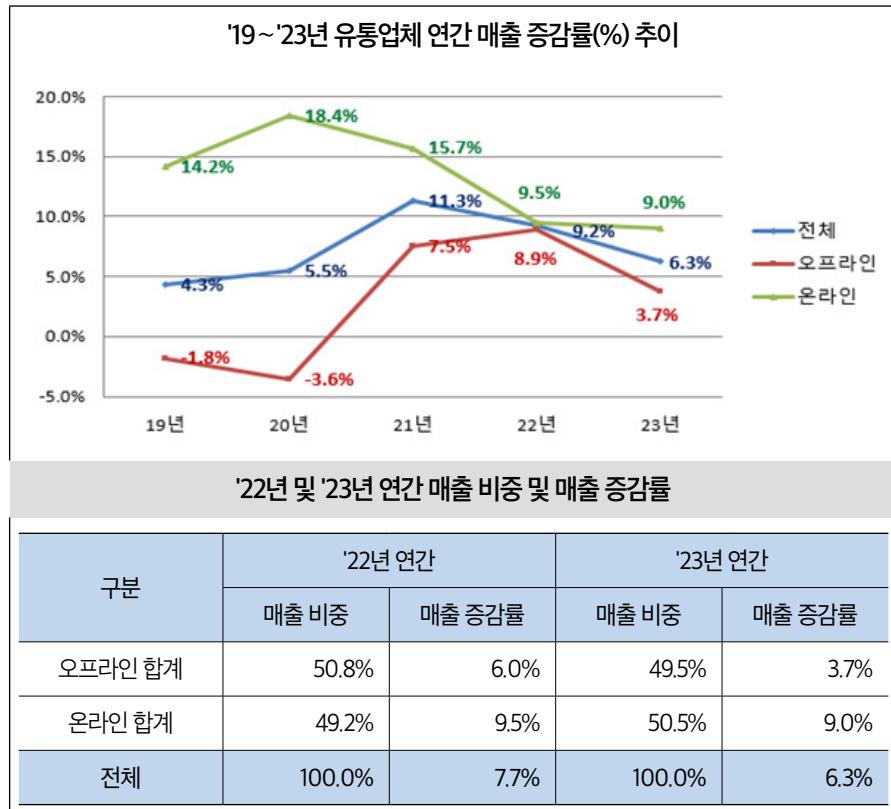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5조)

-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2)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26조)

-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2)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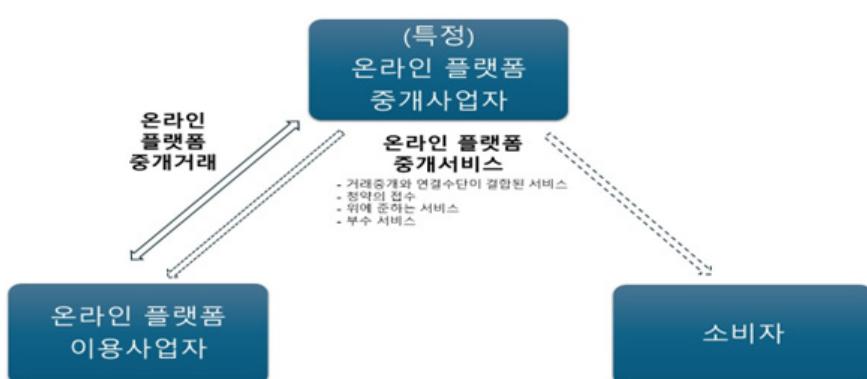


*출처 : '23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6.3% 증가, 산업통상자원부(24.1.30)

[불공정거래 · 부당행위 규율 법 제정 필요성]

구 분	사례수	매우 필요함 (①)	다소 필요함 (②)	다소 필요없음 (③)	전혀 필요없음 (④)	필요함 (①+②)	필요없음 (③+④)
온라인쇼핑몰	(603)	25.4	39.6	29.7	5.3	65.0	35.0
배달앱	(300)	30.7	30.7	35.7	3.0	61.3	38.7
숙박앱	(200)	42.0	32.0	23.0	3.0	74.0	26.0

*출처 :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체 수 및 매출액]

구분	전체	기업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업체 수	475개	127개	104개	244개
매출액*	114.4조원	87조원	17.8조원	9.6조원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2,408억원	6,850억원	1,712억원	393억원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광고·증개·입점 수수료 매출액 합산

** 정보통신업자 기준,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정보통신업자 기준, 매출액이 800억원 이하인 기업

※ '23년 부기통신사업 실태조사 경과 및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

공정거래	<input type="radio"/> 부당한 공동행위 <input type="radio"/> 보복조치
하도급	<input type="radio"/>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input type="radio"/> 부당한 위탁취소 <input type="radio"/> 부당반품 <input type="radio"/>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input type="radio"/> 기술자료 유용 <input type="radio"/> 보복조치
가맹	<input type="radio"/>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input type="radio"/> 불공정거래행위 <input type="radio"/> 보복조치
대리점	<input type="radio"/> 구입강제 <input type="radio"/>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input type="radio"/> 보복조치
대규모	<input type="radio"/> 상품대금 부당 감액 <input type="radio"/> 상품의 부당 반품 <input type="radio"/>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input type="radio"/> 보복조치

3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944호



김 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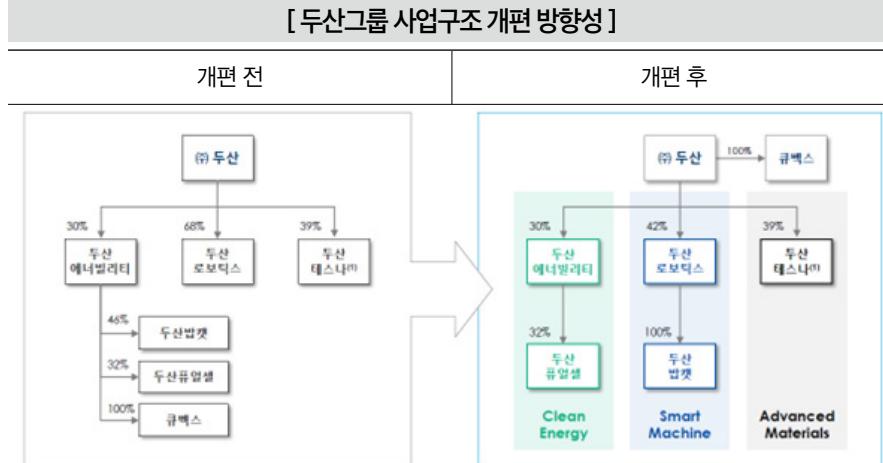
선 거 구 경기 평택시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 · 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 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적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등)..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7.18.	제안
상임위원회	2024.09.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소위원회	2025.02.20. 2025.07.21. 2025.11.24.	상정 축조심사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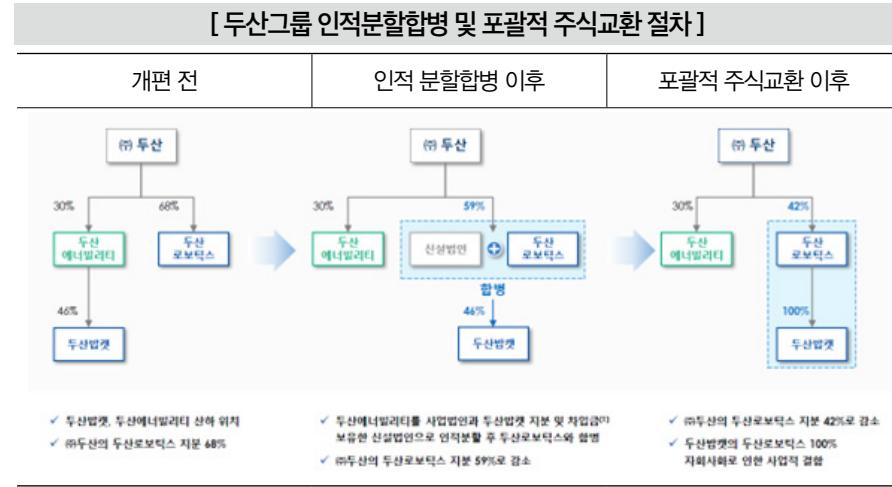
▶ 참고자료



주: 지분율의 경우 의결 기준 적용, 주식매수청구권 미발생 가정

주1) Financing Vehicle인 두산포트폴리오파이낸싱은 표기 생략함.

(자료: 두산,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사업구조 개편 및 성장전략」, 2024.7.)



주: 지분율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미발생 가정

주) 세무상 적격지준(Tax 미발생)을 위해 과거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밥캣 인적분할합병 과정에서 두산밥캣 취득을 위해 부담한 차입금 중 Refinancing 등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금액(약 7,200억원)을 함께 분할

(자료: 두산,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사업구조 개편 및 성장전략」, 2024.7.)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045호



김 윤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형사처벌 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11.10.	제안
소 위원회	2025.11.18.	상정
	2025.11.21.	축조심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7.)

국회교통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IV.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3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4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4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4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4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9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5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5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6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7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8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8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8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8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9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9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0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11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1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11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3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4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고업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정무위원회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4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1	국유재산특례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조세특례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1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사료의 수집 ·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영유아특별회계법안	
	19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20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교육위원회		28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이동통신보안법안
		2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2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6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방위원회	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특별법안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전사 · 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1	10 · 2901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세특례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11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12	1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13	1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14	1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5	1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	16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7	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2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2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2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3	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2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6	26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	2	농어촌 빙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3	3	농어촌 빙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4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5	5	농어촌 빙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6	6	농어촌 빙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7	7	농어촌 빙집정비 특별법안
	8	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1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12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13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1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15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	1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1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19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	2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2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2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23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2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2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0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0	11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12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1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1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6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3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39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5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5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55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56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지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5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6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18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19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0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임금체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0	6	건설안전특별법안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1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5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5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6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1	국가사이버안보법안
		2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857호



이 훈 기

선 거 구
정 당
당 선 횟 수
소속위원회

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초선(제22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 참고자료

[2020년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9.말
건수	3	21	17	55	36	28
액수	6,775	8,248	101,833	23,206	61,197	165,857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 주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일시	기업명		위반행위	부과액수
2025. 8. 27.	SKT		보호법 §29, §31①③, §34①	134,791백만원
2025. 7. 24.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		보호법 §28의8①, §28의8④, §31의2①, §38④	1,978백만원
2025. 5. 14.	테무	Whaleco Technology Ltd.	보호법 §28의8①, §26②④, §34의2①, §38④, §63①	879백만원
		Elementary Innovation Pte. Lte.	보호법 §24의2①	490백만원
2025. 1. 22.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보호법 §26②, §28의8①	2,405백만원
2024. 5. 22.	카카오		舊 보호법 §29, §39의4①	15,141백만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제도 관련 해외 사례]

(EU) 전체 매출액(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4%까지 부과 가능
 (중국) 전년도 매출액의 5%까지 부과 가능
 (FTC) 건당 최대 \$53,088(하루당 누적 부과). 동의의결 · 판결로 징벌적 수준 피해보상

※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 : 정보보호당국의 행정처분, 주법무장관의 민사벌금도 부과 가능(행정제재와 병과不)

유형	주체	금액
행정제재(과징금)	주정보보호당국	위반행위 당 \$2,500 / 아동 관련은 \$7,500
민사벌금	주법무부장관	금액은 위와 같음 (※행정제재와 병과不)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919호



김 재 섭

선 거 구 서울 도봉구갑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10.25.	제안
상 임 위 원 회	2025.0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상정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상정
	2025.11.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상 임 위 원 회	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 제안이유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규정 중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모든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에 관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증권의 유통은 상장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다양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 이에 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한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 · 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 · 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면서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

▶ 주요내용

가. 온라인 · 디지털 플랫폼에 따라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여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4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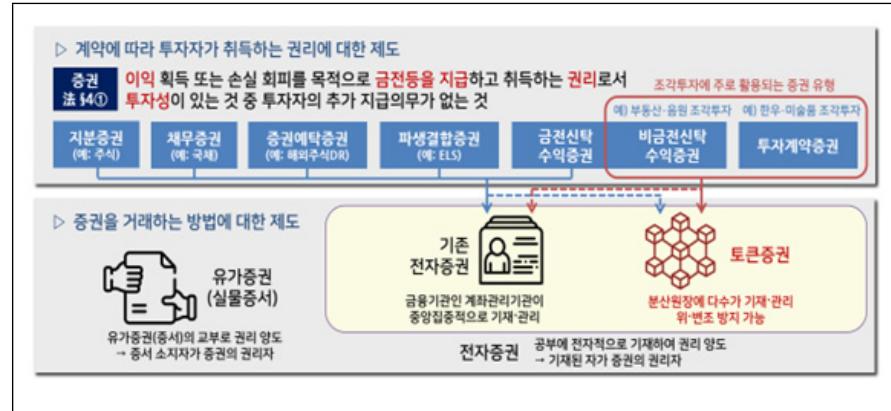
나. 상장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 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66조제1항 신설).

다.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경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3항 신설).

라.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려 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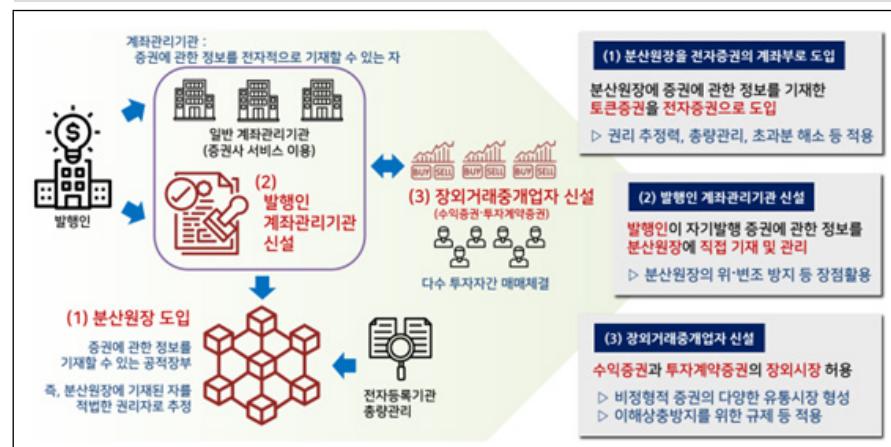
참고자료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의 개념]



(자료: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 주요내용]



(자료·글유의원회)

「주요국의 토크 증권 사례」

「시사점」

- ▶ 독일 ·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증권 권리 양도의 근거법에 분산원장 기술을 명시해 토큰 증권 거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
 - ▶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의 발행 · 유통에 대해서도 공시규제, 인 · 허가 규제 등 기존 증권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

구분	주요내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호증권) 암호증권등록부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은 전자증권을 물건으로 의제 → 암호증권도 물건 의제 □(관리책임) 발행인이 스스로 암호증권등록부의 관리자가 되거나, 서비스제공자에게 위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명확하지 않으면 발행인을 관리자로 간주하며, 관리자는 증권예탁기관이나 보관기관일 필요 없음 ○ 관리자는 전자등록부 관리자로서 동일한 책임을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등록부가 현재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며, 위반시 재산상 손해를 배상 - 위조 등 데이터 손상이나 권한 없는 데이터 변경을 방지

구분	주요내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산원장) 시간 순서에 따라 데이터가 기록되고 권한 없는 말소와 변경으로부터 데이터가 보호되는 기록 시스템 ○ 기술요건 없이 암호증권등록부 관리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관리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하도록 하는 구조 ○ 증권은 권리자(양도인)의 지시에 기초한 대체등록을 통해 양도 □(대상) 무기명 채권(이익참가증권 포함)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산원장증권)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분산원장에 등록된 권리 ○ 분산원장을 통해서만 양도·거래 → 중앙예탁결제기관 불필요 ○ 양도가능성 있는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며,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인의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산원장증권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법, 강제집행 및 파산법, 국제사법, 금융서비스법, 국립은행법, 은행법, 금융기관법, 자금세탁방지법, 등록증권법, 금융시장인프라법 개정 □(관리책임) 채무자(발행인)에 분산원장을 구성·운영할 의무 부과 □(분산원장) 분산원장이 갖추어야 할 대략의 요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권리자가 발행인 도움 없이 법적 지위를 입증하고 권리 양도 ii) 다수의 독립 참여자의 공동 관리와 같은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통해 무단 변경으로부터 무결성 확보 iii) 권리의 내용, 원장의 기능, 등록에 대한 합의는 원장이나 링크된 별첨자료에 기록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기록이전권리) 사업수의 분배 등 투자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유가증권 등 → 금융상품거래법(자본시장법) 규제 ○ 기존 전자증권 제도의 대상인 주식, 채권, 펀드 수익증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회사 사원권, 신탁수의권, 집단투자자분 등 □(전자증권) 전자증권법에는 분산원장을 도입하지 않아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방식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거래실무상 약관으로 계약상대방의 승낙을 위탁받고 있으며, 샌드박스를 부여받은 거래 플랫폼의 경우 확정일자 있는 공증으로 간주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전자기록장치 등록) 금융증권은 발행인·중개인의 유가증권계좌에 등록되거나, 공유전자기록장치에 등록 ○ 금융증권은 계좌대체나 공유전자기록장치의 등록을 통해 이전 ○ 권리자는 중개인으로 하여금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공유전자기록장치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분산원장) 기술요건 없이 분산원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기록된 정보의 무결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구현 ii) 권리자가 보유 증권 종류 및 수를 식별하고, 거래명세서에 접근 가능하여야 함 iii) 외부 데이터 기록 시스템 등 보존계획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토큰) 자본시장 상품을 구성하는 디지털 토큰은 증권선물법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주식, 채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상품 □(사례) ADDX 등은 예탁자로서, 예탁부 관리 방식으로 분산원장을 사용하고, 약관에서 전자지갑을 투자자계좌로 간주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 법령 정비 없이 현행 증권법 및 증권거래법 적용 □(사례) 증권을 미발행하고, 블록체인을 이용해 명의개서 하는 방식 다수 활용

3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222호



한 창 민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사회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08.18.	제안
상 임 위 원 회	2024.11.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사모펀드를 다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하여 투자자 보호 및 감독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

2021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설명의무 및 감독기관 보고의무가 일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높은 레버리지를 동원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재산을 유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통제하거나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회원국이 그 내용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유럽연합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은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여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사모펀드 전반에 걸쳐 보고의무 및 공시의무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EQT AB, CVC 캐피탈 등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연례보고서 및 주요 운용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투자자 및 일반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공시·보고의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AIFMD를 참고하여 강화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및 레버리지 한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비율을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재무상황을 포함하여 총 차입한도가 적용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1항·제8항).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의 자산을 유출하기 위한 결의에 관하여는 집합투자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7항 신설).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지급받은 보수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3항 및 제249조의12제2항).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황 및 지급받은 보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9항 및 제249조의14제15항 신설).

마.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집합투자 재산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및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함(안 제249조의8제1항·제2항, 제249조의14제14항 신설).

바.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기업 간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행위에 대해 거래 내용 및 내부통제 절차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6제5항·제6항 신설).

▣ 참고자료

[사모펀드의 구분]

구분	운용사	투자자
일반 사모펀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헤지펀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
기관전용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	업무집행사원 (GP, General Partner)	유한집행사원 (LP, Limited Partner)

(자료: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제도개편(2021년)]

구분	종전	현행
분류 체계	<p>사모펀드 투자자</p> <p>↓</p> <p>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동일)</p> <p>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동일)</p>	<p>사모펀드 투자자</p> <p>↓</p> <p>일반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p> <p>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자율성 강화)</p>
투자자보호 및 운용규제	<p>투자자 보호수준</p> <p>← <현행> <개선> →</p> <p><현행 유지></p> <p><선별적 강화>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p> <p>●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제외</p>	<p>운용 규제</p> <p>← <현행> <개선> →</p> <p><규제 일원화·원화>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p>

(자료: 금융위원회)

[개정안에 따른 차입한도의 변화]

구분	차입한도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u>400%</u>¹⁾ ○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u>400%</u> (단, 원화된 기준 적용2))

한창민 의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u>400%</u>¹⁾ ○ (신설)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u>200%</u> (단, 완화된 기준 적용²⁾) ○ (신설) 다른 회사의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u>200%</u> (단, <u>인수기업 재무상황 포함하여 적용³⁾)</u>
--------------------	--

주1) ①파생상품 위험평가액, ②채무보증액(또는 담보제공액), ③차입금, ④RP 매도금액, ⑤공매도 금액이라 할 때,

①+②+③+④+⑤ 이 400%(현행) 또는 200%(개정안) 이하

주2) $\frac{\text{③}}{\text{순자산}} + \frac{\text{①+②+④+⑤}}{\text{순자산}}$ 이 각각 400%(현행) 또는 200%(개정안) 이하

주3) $\frac{\text{사모펀드 차입} + \text{인수기업 차입}}{\text{사모펀드 순자산} + \text{인수기업 순자산}}$ 이 200% 이하

[사모펀드 차입비율 분포(2024년 말, 펀드 순자산 기준)]

(단위 : %)

구분	0	0~100%	100~200%	200~300%	300~400%	평균
일반 사모펀드	63.9%	34.1%	1.7%	0.3%	0.1%	20.7%
기관전용 사모펀드	43.6%	44.6%	9.3%	2.3%	0.3%	38.7%

주: 레버리지 200% 이상 원인: (일반) '차입 후 회사채 투자' 등 전략 구사

(기관) 펀드 결성 초기 단기차입, 캐피탈 콜 이후 상환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사모펀드의 차입비율 제한은 해외에는 없는 규제로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 PEF가 해외 PEF에 의하여 대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PEF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을 인수하려는 해외 PEF에 대응하는 국내자본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되었음.) 현재에도 대다수의 PEF가 차입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PEF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의 차입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 사모펀드에게 차입한도 초과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방안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피인수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등을 목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차입 규모와 순자산 규모를 포함하여 차입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창민의원안(제249조의7제8항)과 관련하여, 피인수기업의 추가 차입이 크게 제한될 수 있어 자금조달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해관계자인 금융투자협회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과다차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규제 강화의 대상을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PEF 협의회는 LBO 방식은 투자대상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순기능이 있고, 차입규제 강화 시 차입한도 제한이 없는 해외 사모펀드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내 M&A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175호

김 남 근

선 거 구 서울 성북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1.12.	제안
소 위원회	상정	
	2025.11.20.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20.)		
상 임 위 원 회	상정 2025.11.21.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 제안이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부품·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유용 행위를 금고 있으나 (제25조제2항),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6 신설).

나.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7 신설).

다.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8 신설).

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9 신설).

마.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
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10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453호



이 철 규

선 거 구 강원 동해시태백시
삼척시정선군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소 위 원 회	접수	2024.11.11. 제안
		상정
	2024.11.21.	제안설명 축조심사
	2024.12.26.	상정
		상정
	2025.02.17.	제안설명 축조심사
	2025.04.08.	제안설명 축조심사
		상정
	2025.12.04.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20.)	
상 임 위 원 회	상정 소위심사보고	2025.12.04. 친반도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반도체는 21세기 4차산업혁명 · 디지털 ·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반도체산업 주도권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관건이 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세계 반도체산업 질서는 설계와 지적재산권, 소재 · 부품 · 장비, 위탁생산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국가별 '분업체제'로 재편되고 있고, 최근 AI반도체의 급부상으로 선진경쟁국들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여기에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투자 유치와 자국 내 생산시설 건설, 수출확대 등에 총력태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간에선 대규모 투자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에 제한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과 도전을 받고 있음.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2023년까지 11년 연속 수출 1위, 수출도 20%대를 차지하며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시장도 장악해왔지만, 시장규모가 메모리반도체의 세 배 이상 되는 팹리스,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고, 세계 반도체 패권경쟁 및 동맹의 재편과 기술 경쟁 등이 겹쳐 K-반도체 전망은 불투명하며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 직결된다는 냉혹한 현실,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역할과 비중 등을 적극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함.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확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 · 확충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각각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 마.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바.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력,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보조금 등 의 재정 지원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사.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제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8조).
- 아.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도입함(안 제31조).
- 자.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3조).

주요발언

<제42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위원장 이철규



위원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성민 법안 소위원회께서 심사보고한 것처럼 오늘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 법률안은 여야가 합의해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과 유사한 취지의 제정 법률안이 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025년 4월 17일 본회의 의결로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

정되어 2025년 10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 마쳐지지 않음에 따라 25년 10월 14일 법사위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고 2026년 1월 13일 본회의에 부의 간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미 관세협상 등 불확실한 무역 상황을 극복하고 AI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각 국의 치열한 반도체 신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큰 틀에서 합의하여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반도체 업계는 업계의 선두인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후발 주자인 중

국과의 기술격차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는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가 필요 하다는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록 반도체 산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 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만 더 이상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그 대안

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단 만큼 조속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야가 합의하여 반도체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 제정법률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제정법률안에 남기지 못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은

추후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략)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그 부대의견에 나온 내용이 연구 근로시간 특례 안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시급성, 절박함을 고려해서 여기까지 여야가 귀중하게 합의해 주신 대로 하지만 이후에 있어서도 그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 있게 저희 상임위 그리고 관련되는 환노위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708호



박 해 철

선 거 구	경기 안산시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미진했거나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변경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반영 의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성평가 등의 절차에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175조).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11.19.	제안
상 임 위 원 회	2025.07.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2025.11.18.	상정 축조심사
	2025.11.21.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2025.11.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대안반영폐기)
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건설안전특별법안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160호



문 진 석

선 거 구 충남 천안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9.22. 제안
상 임 위 원 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2025.11.18.

제안이유

건설공사는 발주 · 설계 · 시공 ·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사 목적물(건축물 · 도로 · 철도 등)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건설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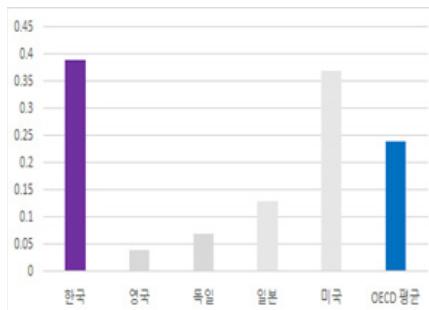
이에,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발주자는 설계 · 시공 · 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 나. 시공자는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5조).
-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 라. 시공자와 하수급시공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31조).
- 마.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설계자, 감리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35조 및 제38조).
- 바. 발주 · 설계 · 시공 · 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

참고자료

[OECD 주요국가 사고사망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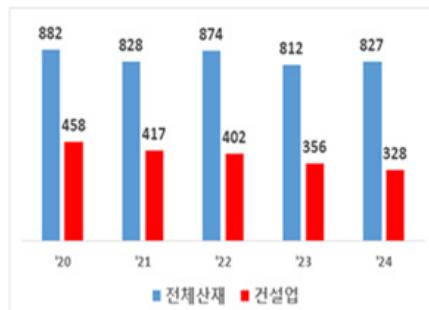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전체산업,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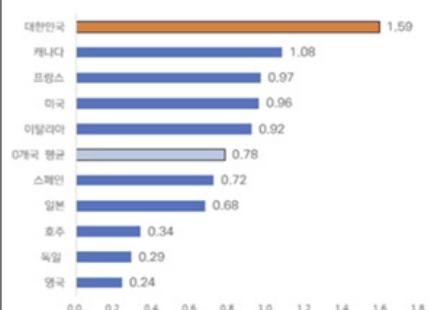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연도별 산재사고 사망자]



[‘23년 국가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자료: 국토교통부





V. 본회의

1. 통과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O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O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O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000호



민 병 덕

선 거 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본 회 의	2025.12.11. 원안가결
-------	------------------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취소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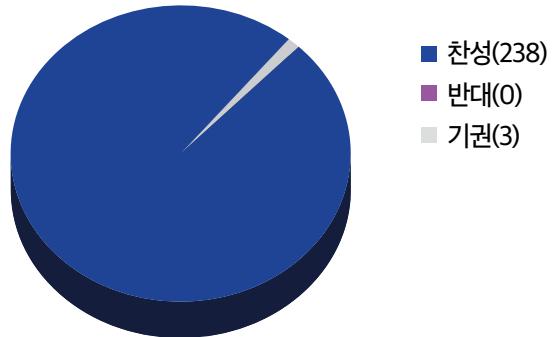
▶ 주요내용

-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 · 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한편,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신설 등).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5.06.26 / 2025.12.11
- 발의자 / 제안자 : 민병덕 의원 등 11인
- 표결 의원 : 재석 241인 / 재적 298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41인(찬성 238/인, 반대 0인, 기권 3인)



YES 찬성 (23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군택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주희 이준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흥기원 황명선 황운아 황정아 황 희 의원



기권 (3인)

강명구 신성범 주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 보고회의

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의안번호 제2214590호

심사 진행 경과

본 회 의	2025.12.02 원안가결
-------	-----------------

제안이유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설비합리화 및 고부가전환 등 구조개편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기업이 신속히 사업재편을 이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 재정 및 금융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 나.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 다.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8조)
- 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9조)
- 마.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 에너지에 한함)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10조)
- 바.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 사.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 아.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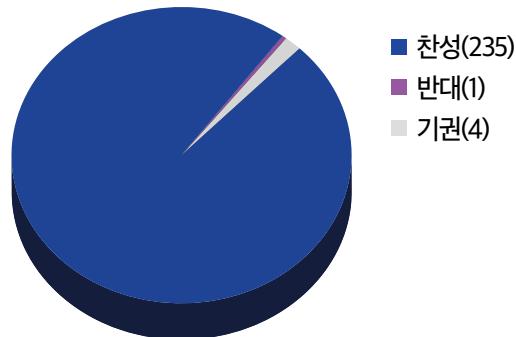
차.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 · 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 ·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6조)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3건)

- [2213909]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0인)
- [221238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의원 등 13인)
- [221071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의원 등 12인)

▣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5.11.16 / 2025.12.02
- 발의자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증소벤처기업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40인 / 재적 298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40인(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4인)



YES 찬성 (23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현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영
허종식 흥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의원

 반대 (1인)

손 솔 의원

 기권 (4인)

윤종오 이해식 전종덕 정혜경 의원

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099호



민 병 덕

선 거 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본 회 의	2025.12.13. 수정가결
-------	------------------

▶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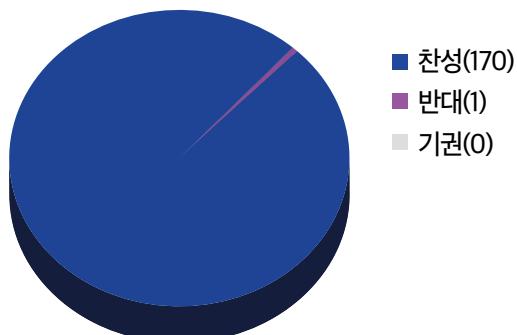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자금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 및 신용기반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에 기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5.12.12 / 2025.12.13
- 발의자 / 제안자 : 강준현의원등 1인
- 표결 의원 : 재석 171인 / 재적 298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171인(찬성 170인, 반대 1인, 기권 0인)





찬성 (17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홍근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준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흥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의원



반대 (1인)

박홍배 의원

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의안번호 제2214591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	2025.11.27. 원안가결
의	2025.12.05. 정부이송

 제안이유

최근 철강산업은 관세 문제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시험 · 신뢰성평가 ·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 설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재정적 · 행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마.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해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를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2조)

바. 철강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사.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 용수 · 수소 수급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

가수도기본계획,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안 제28조)

자.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특성화대학 등 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카.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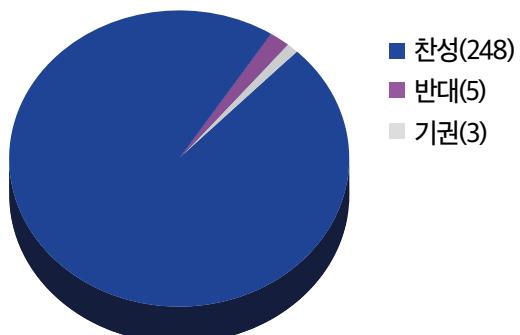
파.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 행위를 하는 경우 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38조)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4건)

- [22139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1인)
- [221243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의원 등 12인)
- [2212186]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업의원 등 13인)
- [221195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 · 이상휘의원 등 106인)

▣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5.11.26 / 2025.11.27
- 발의자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표결 의원 : 재석 256인 / 재적 298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56인(찬성 248인, 반대 5인, 기권 3인)





찬성 (24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준생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흥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의원



반대 (5인)

김준형 손 솔 윤종오 전종덕 전혜경 의원



기권 (3인)

신장식 용혜인 한창민 의원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용어해설

제안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 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59의2).

제안설명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 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 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국회법』§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
-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 · 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 공청회** · **청문회**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58⑥). 「국회법」은 공청회 · 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축조심사** ……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57⑦ · §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 찬반토론** ……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106).
- 심사보고서** ·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표결**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54). 번안동의(「국회법」§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87).

정부이송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98).

공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별첨 국회 일정표

12월호는 2025.11.17.부터 2025.12.12.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 국회본회의 ● 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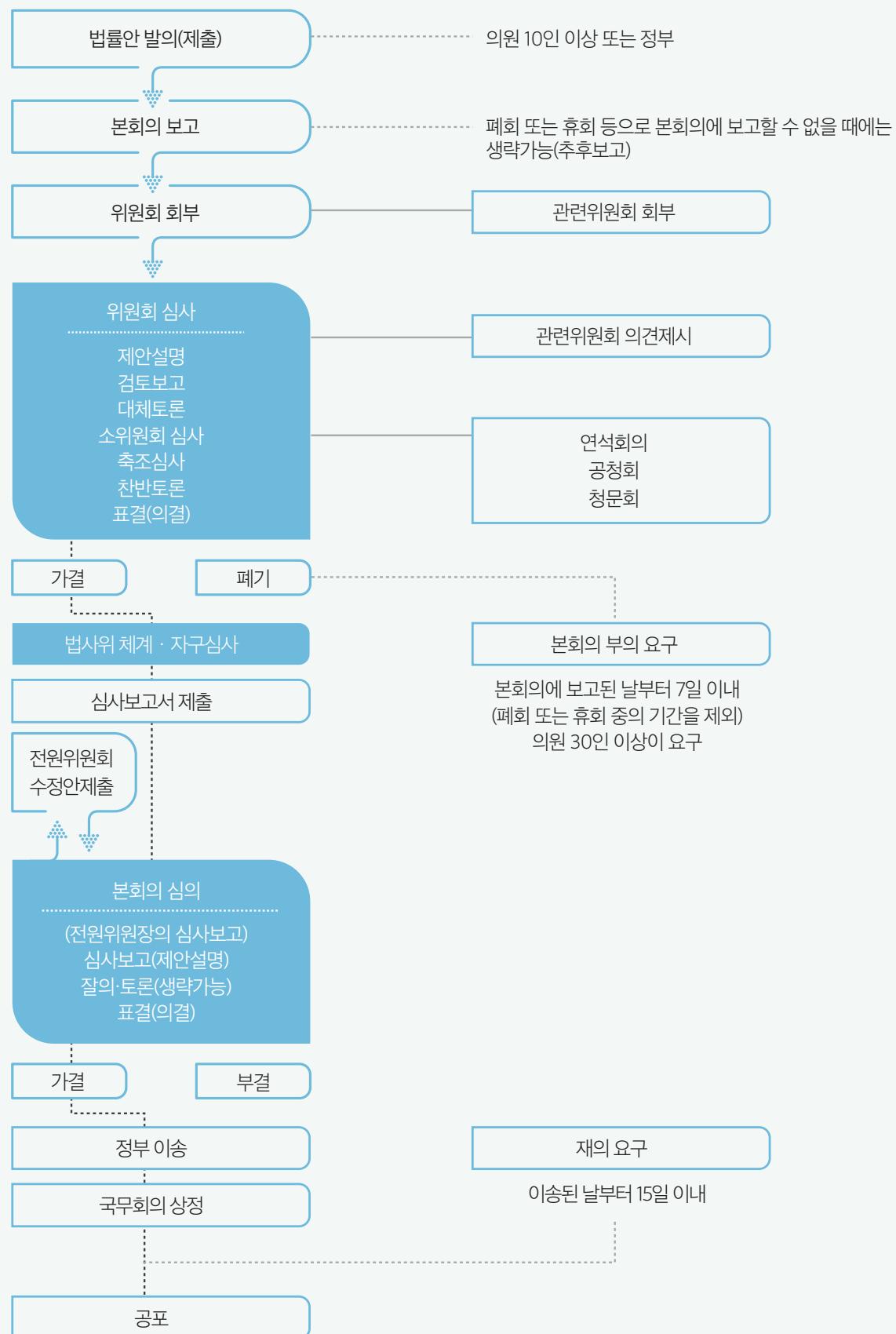


R&B

Policy & Business
Report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19층

www.draju.com